

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.

제 9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

본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고,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신탁계약서, 대출약정서와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르기로 한다.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10 조 일부 무효 등

본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내용이 법령 기타 사유에 따라 무효,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내용의 효력,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질권자가 원본 1부를,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.

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

대표이사

채권자 겸 근질권자

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, 6층(여의도동,기계산업진흥회)

대표이사 김 학 형 (인)